



입 법 정 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1. 공연법 (개정).....	2
2.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3
3. 문화재보호법 (개정).....	4
4. 관광진흥법 (개정).....	5
5.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6
6.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	7
7.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8
8.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개정).....	9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0
1.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	11
2.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3. 전라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	13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14

공연법

1 [일부개정 `22. 5. 3. 시행 `23. 5. 4.]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2

I

법령 제정 · 개정 동향

■ 개정이유

- 각종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활용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공연장에서 화재로 인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공연계가 침체된 상황에서 온라인 공연과 공연의 영상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관객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공연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3 신설).
- 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하되,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 대상에서 제외함(제11조의7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방화막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도록 함(제12조제1항제1호).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마.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교통안전법 시행령

2 [일부개정 `22. 5. 3. 시행 `22. 5. 3.]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현장여건에 맞는 교통안전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 요구, 소관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교통사고 원인조사, 운행기록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3 [일부개정 `22. 5. 3. 시행 `23. 5. 4.]

소관부서 : 문화재청(법무감사담당관), 1600-006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의 협의만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 민간이 소유·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관람료 징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4 [일부개정 `22. 5. 3. 시행 `23. 5. 4.]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044-203-281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관광특구의 지정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의 사무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별시의 시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독서문화진흥법

5 [일부개정 `22. 5. 3. 및 시행 `23. 5. 4.]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 044-203-32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6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2. 5. 9. 시행 `22. 5. 9.]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안전문화교육과), 044-205-427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또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중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영리법인을 제외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추가하여 국민에게 보다 폭넓은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안전교육: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

7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 `22. 5. 6. 시행 `22. 5. 6.]

소관부서 : 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교육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를 제한하고,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충 저류시설 및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2. 5. 17. 시행 `22. 7. 5.]

소관부서 :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 044-204-759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704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안

[의결일 `22. 4. 21.]

제정이유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2021년 건립된 ‘노사평화의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주요사업, 개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 나.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 ~ 제8조)
- 다. 대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6조)
- 라. 관람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제19조)
- 마. 노사상생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 제21조)
- 바. 소장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 제27조)
- 사. 사용·수익 허가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 ~ 제29조)

2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결일 `22. 4. 18.]

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나. 사업지원 및 재정지원, 상품권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9조)
- 다.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4조)

제정이유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나.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라.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1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훈회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특정 기관(화성도시공사)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제6조 관련]

[의견22-0115] 경기도 화성시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훈회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특정 기관(화성도시공사)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수탁기관 대상 중의 하나로 특정 기관을 추가해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법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의 2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이 경우 일반입찰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관련 분야의 처리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제1항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보훈회관 조례”라 한다)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도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의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위탁조례 제9조제1항의 수탁 신청 자격을 앞에서 열거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화성도시공사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반드시 화성도시공사로 특정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훈회관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 하나로 화성도시공사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도시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위탁을 할 때는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탁기관 대상 중의 하나로 특정 기관을 추가해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부담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화성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시설의 운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한다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도 조례와 같은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해야만 하는지(「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의견22-0139] 충청북도 보은군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한다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도 조례와 같은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해야만 하는지?

○ 의견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부칙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는 별도로 같은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보은군에서는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이하 “수돗물조례”라 한다) 제1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원인자부담금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사항을 규정하고 원인자부담금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조례 시행규칙도 함께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법관계를 새로운 법관계로 전환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종전의 법령에 따라 형성된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구법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새로 시행 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경과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에 입법목적 및 취지, 주민의 법 감정,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어떤 내용의 경과조치를 둘 지에 대한 판단은 입법권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제정하려는 원인자부담금조례의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면 원인자부담금조례 시행 전에 수돗물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된 원인자부담금은 종전에 규정에 맞게 될 것이고, 원인자부담금 시행규칙에 별도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수돗물조례의 규정에 의해 부과·징수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조례의 부칙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별개의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조례 부칙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는 별도로 같은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자치법규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보은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12조 (생략)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족자원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바다 전역에 걸쳐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골재채취법」 제1조 및 제22조 등 관련)

[의견22-0114] 충청남도 태안군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족자원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바다 전역에 걸쳐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 의견

골재채취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바다의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수가 지방자치단체 바다 전역에 걸쳐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바다 골재채취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골재채취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골재채취법」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등을 정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골재 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골재채취의 금지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골재채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골재채취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바다의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골재채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②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粗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광물의 채굴(採掘)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밝혀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복구용·군사시설용 등 공용(公用) 또는 공공용(公共用)으로 채취하려는 것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